

행위허가 등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
				30일	
신고인	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	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	
				(전화번호:)	
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		명칭 및 위치		허가 연월일	
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	행위구분	[] 건축물의 건축	[] 공작물의 설치	[] 토지의 형질변경	[] 토석의 채취
		[] 토지분할	[]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	[] 죽목(竹木)의 벌채 및 식재(植栽)	
	상세 내용	※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	허가조건	※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	허가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
허가 변경사항		변경내용			
※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변경조건		변경 연월일	
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	행위구분	[] 건축물의 건축	[] 공작물의 설치	[] 토지의 형질변경	[] 토석의 채취
		[] 토지분할	[]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	[] 죽목(竹木)의 벌채 및 식재(植栽)	
	관계법령 조문	※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관계법령 조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착수 연월일			완료 연월일		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하여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첨부서류	1.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
------	--